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상기 의원 (대표) 발의)

의 번 호	404
--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2월 01일

발 의 자 : 장상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제리, 여 명, 이병도,  
김화숙, 고병국, 김인호,  
김경영, 이영실, 김경우,  
오현정, 송명화, 최기찬,  
최정순, 노식래, 조상호,  
이광성, 박상구, 이석주,  
채인묵, 신정호, 김재형,  
김종무, 정재웅, 이광호,  
이현찬, 성흠제, 봉양순,  
김호평, 경만선, 권순선,  
문장길, 김희걸, 이세열,  
김용연, 김기덕, 우형찬  
의원(3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자연경관지구는 산지·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나, 건폐율 및 높이, 조경면적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과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구 해제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 이에 따라 현행 높이 등 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.

- 서울시는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은 3층 12m, 건폐율 30% 이하의 건축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항 본문 중 “3층 이하로서 12미터”를 “4층 이하로서 16미터”로 개정하고 단서 조항 삭제. (안 제39조제4항)
- 나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7항 본문 중 “5층 이하로서 20미터”를 “7층 이하로서 28미터”로 개정함. (안 제39조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 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 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 
「건축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1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4항 본문 중 “3층 이하로서 12미터”를 “4층 이하로서 16미터”로 한다. 단서 조항은 삭제한다.

제39조제4항 1호에서 3호를 삭제한다.

제39조제7항 본문 중 “5층 이하로서 20미터”를 “7층 이하로서 28미터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·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<u>3층 이하로서 12미터</u> 이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·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⑤ ~ ⑥ (생 략)</p> <p>⑦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, 정비구역안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<u>5층 이하로서 20미터</u> 이하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39조(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4층 이하로서 16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. (이하 단서 삭제)</p> <p>1. ~ 3. (삭 제)</p> <p>⑤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----- ----- ---- 7층 이하로서 28미터 이하로 ----- .</p>